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3. 10. 30.(월)
10:00(국무회의 시작시)

배포 2023. 10. 27.(금) 오후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의 첫걸음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어기, 금지체장 완화·폐지 대상>

금어기 완화	금어기 폐지	금지체장 폐지
소라, 우뚝가사리, 코끼리조개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항, 도박류, 뜸부기, 백합, 털게, 필닭새우	개서대, 닭새우, 백합, 털게, 필닭새우, 황돔, 황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성미경 (044-200-5540)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책임자	과 장	강수경 (051-720-2270)
		담당자	연구관	윤상철 (051-720-2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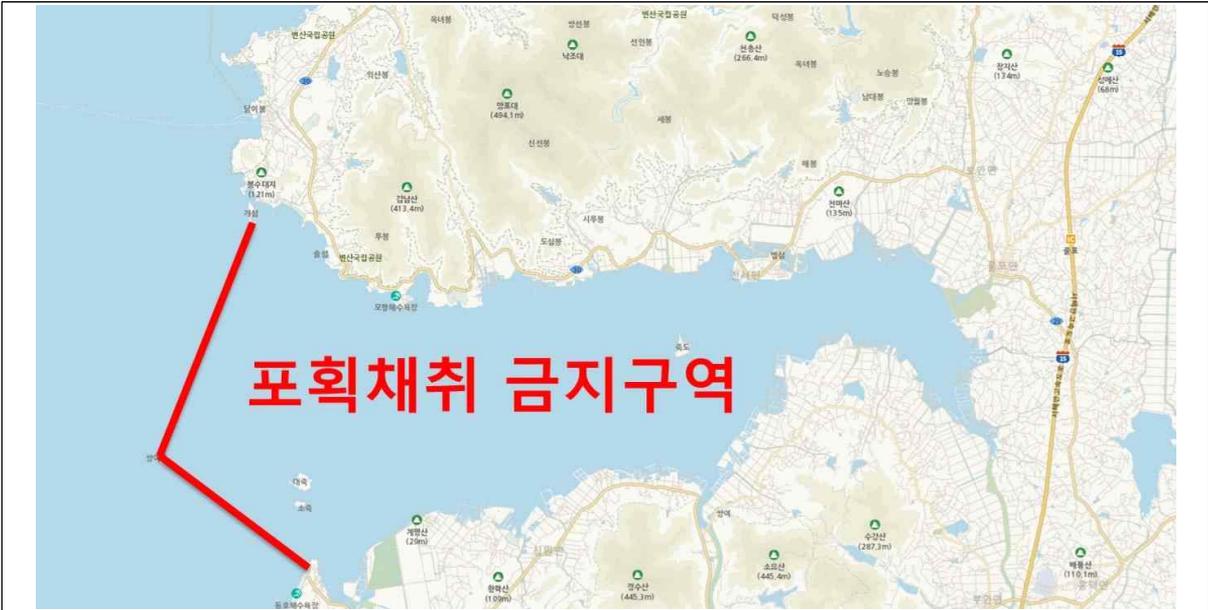
참고 1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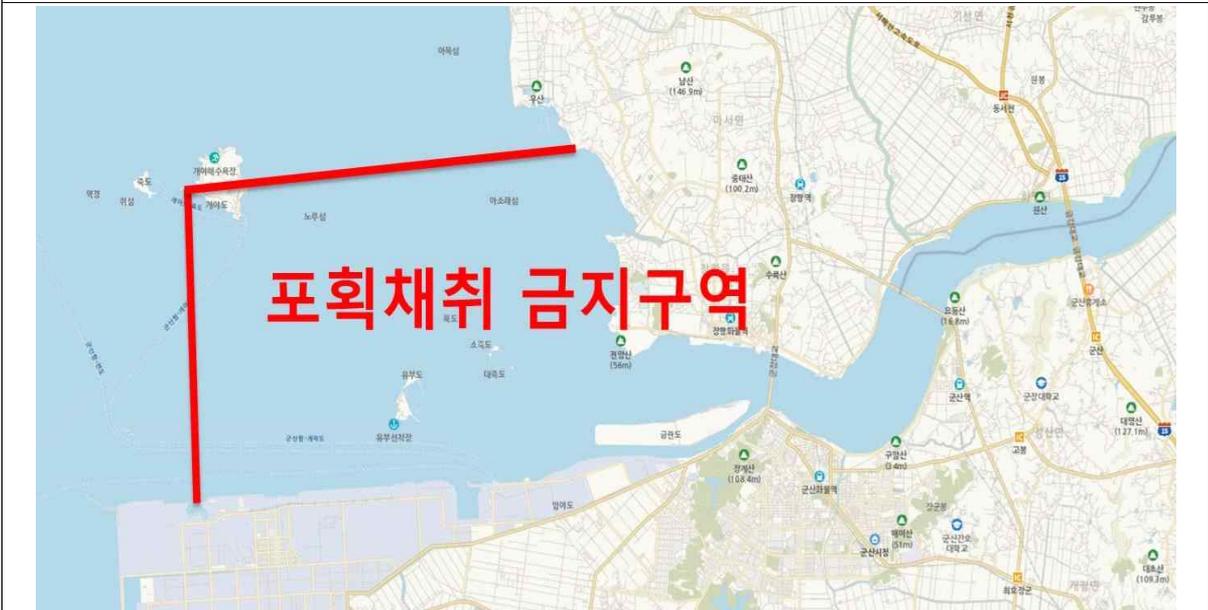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 지정내역

-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곰소만('64.1.1. 지정/9,820ha)



금강하구('76.9.7.지정/11,280ha)

참고 2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홍보자료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품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살오징어				고등어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3.1~6.30	4.1~5.31(단, 근해채취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4.1~6.30 중 1개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21cm										
월	5월				6월													
품종	대하	전어	말쥐치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완화)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1~8.31	6.1~6.30 (시·도지사는 4.1~9.30 중 1개월 이상 지정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6.1~6.30(여수 삼산면), 6.1~8.31(제주) 7.1~8.31(제주 추자도), 6.1~7.31(울릉, 독도)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울릉, 독도 7cm)							
월	6월			7월														
품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옥돔							
포획금지기간	6.1~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채취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31(제주)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지방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황문장)	15cm						4cm(제주)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종	전복류		넙치	연어	돔	취노래미	우뚝가사리(완화)	문치가사리										
포획금지기간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3.31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										
구분	금지체장																	
품종	기름가사리	기수재첩	갯장어	넙치	농어	도루묵	대문어	물돔	미거지	민어	방어	불락	봉장어	용가사리	조피불락	참가사리	참돔	청어
포획금지체장	20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23cm	20cm	24cm	20cm

**수산동물의 종류별
제장 기준**

어류 **갑각류** **오징어류** **패류**

**암컷 포획금지
4종**

☑️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TAC 참여 어종 금어기(붉은대게), 금지체장(고등어, 도루묵, 키조개) 3년 유예 : '23.3.3~'26.6.30